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 출연 근거 등 마련 >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212호)

2026.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 출연 근거 등 마련	3
2. 관계기관 의견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9. 24.

(3) 회 부 일 : 2025.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 나.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

Ⅲ. 검토의견

1.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 출연 근거 등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공탁물 외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조제1항),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 ③ (생략)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① ----- -----물품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매년 그----- -----.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 ----- ----- -----.

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의 운용 관련

공탁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바,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변제공탁¹⁾,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하는 형사공탁²⁾ 등이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음³⁾.

1)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공탁규칙」 제2조(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辨濟供託)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保證供託)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에 따른 재심(再審)이나 상소(上訴)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執行停止)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제1항에 따른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마.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暫定處分)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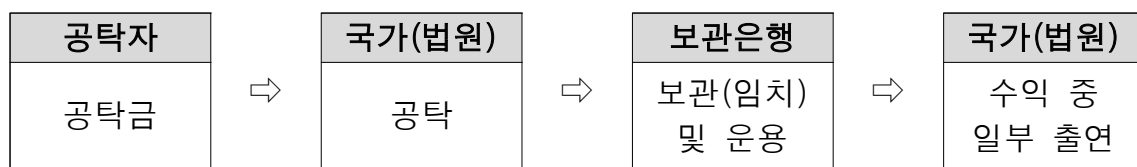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7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이러한 공탁물의 보관·관리 등을 위하여 현행 「공탁법」 제3조4)에서는 대법원장이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9조5)에서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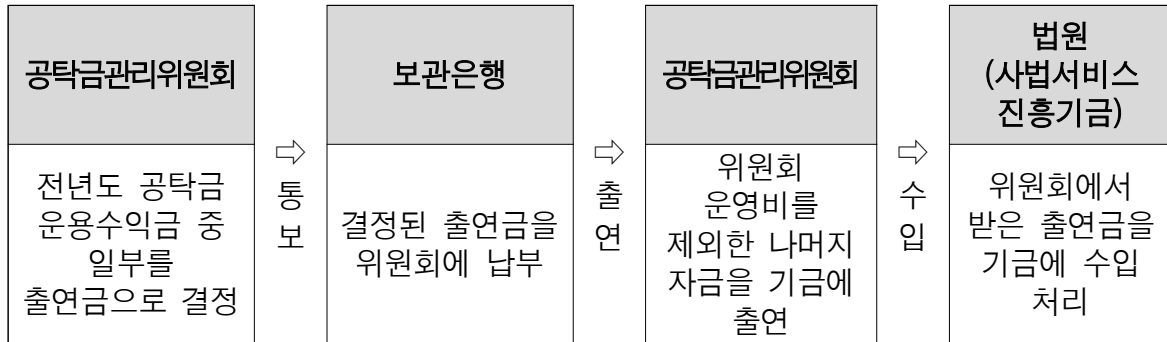
법원행정처는 공탁금을 보관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각급 법원의 보관은행으로 지정하여 보관하도록 하고6), 보관은행은 보관된 공탁금을 운영하여 그에 따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고,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이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공탁금 운용수익 발생 흐름도>



3. 집행공탁(執行供託)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解放金額)의 공탁
4. 몰취공탁(沒取供託)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따른 소명(疏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 4) 「공탁법」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 5) 「공탁법」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6) 2025년 12월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현황(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 총 10개 은행(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iM뱅크,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출연금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구조>



한편, 현재 「공탁법」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대법원규칙)에 근거하여 공탁금과 유사한 성격의 “법원보관금⁷⁾”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으로 함께 지정⁸⁾하여 출납, 예탁, 보관, 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공탁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공탁금과 달리 법원보관금의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어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수익금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7)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8)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취급점의 지정) 법원보관금의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현재 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 시 ‘보관금·송달료 보관은행은 본 공고에 따라 선정된 은행으로 동반 교체함’을 지정조건에 명시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으로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음.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2년 8월 감사원은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보관은행의 운용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과도한 수준의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⁹⁾.

<법원보관금 보관은행 운용수익 산정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관금평잔(직전년도)	1,849,787	2,062,639	1,731,755	1,695,936
운용수익	48,094	49,503	55,416	76,317
포괄이윤	27,747	30,940	31,172	30,527
이자비용	4,070	2,063	1,732	5,936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2025. 12.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탁물 외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수익금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되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감사원 통보(2022년 8월 23일), “법원보관금 운영에 따른 수익의 보관은행 귀속 부적정”

특히 개정안은 공탁금의 경우 보관은행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 운용수익금 중 일부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원보관금의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어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수익금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의 지적(2022년 8월 23일)을 고려하여 법률에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일부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민간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바¹⁰⁾, 법원은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으로 약 2,856억 원을 총 수입으로 예상하면서, 그 중 민간출연금 계획안에는 기존의 공탁 출연금 2,447억 원에 더하여 법원보관금 출연금으로 400억 원이 추가로 출연될 것을 전제로 수입계

10) 「공탁법」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확을 편성하여 예산이 확정되었고, 이는 「공탁법」 개정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합 계	960,675	1,087,242	126,567	13.2
□ 예 산	729,896	801,618	71,722	9.8
- 일반회계	472,174	528,114	55,940	11.8
- 등기특별회계	257,722	273,504	15,782	6.1
□ 기 금	230,779	285,624	54,845	23.8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30,779	285,624	54,845	23.8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2025. 12.

< 2026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민간출연금 수입계획 내역 >

연 도	금 액(백만원)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년도	284,740	■ 2026년 예상 공탁 출연금 및 「공탁법」 개정 예정으로 인한 신규 법원보관금 출연금 적용 - 공탁 출연금 2,447억 4,000만원: 2025년 1월~3월까지의 각 은행별 공탁금 평균잔액에 각 은행별 2025년 예상 자금운용수익률 및 순이자마진을 적용하여 산출 - 법원보관금 출연금 400억원: 현재 공탁출연금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산출. 2023년 보관금 평균잔액에 각 은행별 2025년 예상 자금운용수익률 및 순이자마진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2025. 12.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만 둘 뿐 출연의 시기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출연에 관한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법원보관금 취급점으로 지정된 은행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에 법원보관금 취급점으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은행은 개정법률에 따른 법원보관금 보관자 지정 은행으로서의 효력을 동일하게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으므로 경과 조치를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을 대법원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경우에도 공탁금과 동일하게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무부는 개정안은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에 대한 출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인바, 법원보관금은 공탁금과 같이 은행에서 보관·운용하는 구조이나 공탁금과 달리 보관은행의 출연의무가 없는 상황이므로 법원보관금에 대하여도 출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 중 일부를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

참고 1

법원보관금취급규칙(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원보관금의 출납·예탁·보관·환급·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취급점의 지정) 법원보관금의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취급점을 지정받았을 때
2. 출납공무원으로 임명받았을 때

제6조(법원보관금의 관리) 법원보관금은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화하여 출납·예탁·보관·환급·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을 전산처리한다.

제7조(법원보관금의 이자) 법원보관금은 대법원장이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하고, 권리실행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분배계획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법원보관금의 납부

제8조(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법원(등기)사무관·법원(등기)주사·법원(등기)주사보(이하 “사건담임자”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9조(법원보관금의 납부) ① 법원보관금을 납부시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건담임

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할 금액을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때와 법원보관금의 납부당사자가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법원보관금을 취급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미리 법원보관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접수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이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출관이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2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입찰에서 현금·자기앞수표가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납부된 경우 집행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한다.

⑥ 계약보증금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번호란에 계약번호, 입찰번호등 계약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계약보증금등의 납부당사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⑧ 민사집행규칙 제64조제3호, 제70조제2호, 제72조제4항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한 은행등이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이용하여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⑨ 민사집행규칙 제7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취급점에 납부하고, 별지 제7-1호서식의 입금증명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취급점의 처리) ① 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다만, 매수신청보증금의 경우에는 집행관,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의 경우에는 지출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제9조제8항 본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며, 제9조제4항 및 제9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한다.

②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출납공무원과 사건담임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제11조(사건담임자의 처리) 사건담임자는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출납공무원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각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제13조(법원보관금의 출급) ① 법원보관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담임법관, 법원사무관 또는 지출관은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동시에 수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② 사건담임자는 전항의 출급명령서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청구자는 교부받은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급명령서를 제출받은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수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1. 사건번호 및 진행번호
2. 재판부번호
3. 출급금액, 출급금의 종류 및 출급의 구분
4. 출급청구자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우편번호
5. 출급명령일, 담임법관명
6.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 그 계좌번호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청구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출급명령이 전자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급명령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완료된 때 출급명령서가 교부 및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또는 제339조의3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증인여비 등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자의 조회) 사건담임자가 경매배당기일의 배당실시를 위하여 이자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15조(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① 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취급점의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7조(사건과의 처리) 사건과장은 당해과에서 출급명령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수불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매주 1회이상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현금출납부등) ① 출납공무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출력하여 매일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법원보관금의 환급

제20조(사건의 종결등록)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잔액의 환급절차) ①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당해사건의 법원보관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종결 당시 납부자의 예납금 중에 미출급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환급 부분에 대하여만 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잔액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출석한 환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종결등록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잔액이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취급점은 납부자에게 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의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과 계좌입금신청에 따른 계좌입금수수는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⑥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잔액환급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⑦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종결사건 법원보관금 수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등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급명령에 이를 준용한다.
- 제21조의2(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①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부동산등경매사건·채권배당사건에 한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한 후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에게 입금증명서 사본을 송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한다.
- ③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입금증명서 사본을, 사건담임자는 제1항 단서의 환급명령서 사본을 기록에 각 편철한다.
- ④ 취급점은 제1영업일이내에 법원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예금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취급점은 매각기일 후 2주내에 반환되지 않은 매수신청보증금이 있을 경우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환급통지를 하고, 사건담임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22조(재배당, 이송 등의 경우) ① 사건의 재배당 또는 이송결정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된 경우와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담임자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수이송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수이송 처리할 수 없는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재배당전 또는 이송전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이를 환급하여 납부할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법원보관금의 국고귀속

제23조(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나 그 이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수입징

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① 수입징수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조서를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서를 당해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이 납부서원부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지시서를 국고귀속조서 1부와 함께 취급점에 송부하여 취급점으로 하여금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사유신고) ① 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등으로 사유신고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그 압류금액과 공탁예정일까지의 이자를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서는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은 공탁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1부는 공탁서사본을 첨부하여 출납공무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에 대하여는 지출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권리실행금에 관한 특칙

제26조(권리실행금의 납부) ① 취급점은 권리실행금을 납부한 대표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의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은 지급을 받을 대표당사자·변호사·분배관리인 등이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분배금의 출급)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 절차가 종료되면 사건담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
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에 기재된 분배내역이 권리확인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3.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의 내용이 전자파일로 저장되어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디스켓 또는 씨디롬 등. 단, 제2호의 확인서와 간인되어 있어야 한다)
4.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임장

②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출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채용법원계좌 및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건담임자는 출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1항제1호·제2호서식 등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명령서와 함께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채용법원계좌를 통하여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 기재 계좌목록으로 출급하도록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는 같은 내용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한다. 출납공무원은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상에 “계좌목록에 의한 출급”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반환한다.

⑤ 사건담임자는 제4항의 출급지시서와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 등을 취급점에 제출하고, 취급점은 분배금임을 명시하여 분배금이채용법원계좌로부터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에 기재된 계좌목록 예금계좌에 이체한다.

⑥ 사건담임자는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전송받은 내용을 분배관리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잔여금의 환급) ① 사건담임자는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당해 사건의 분배금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 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환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채용법원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임자는 환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28조제1항제4호서식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환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채용법원계좌로 환급하도록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한다.

④ 사건담임자는 제3항의 환급지시서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 위임장 원본에 의하여 제1항의 잔액을 출급하여 분배관리인 명의로 공탁한다.

제30조(준용규정) 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신고를 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수령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확인이 된 구성원에 대한 분배금의 출급 및 환급에 대하여도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였으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분배관리인이 제28조에 의하여 다시 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권리실행금의 취급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①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법원보관금 잔액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이내에 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 하여금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미납부·미출급명세서를 전산출

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① 출납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원보관금취급점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법원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장부등의 보존) 출납공무원은 수입과 지급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제35조(계산증명) ① 출납공무원은 당해연도 종료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수입과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수납일 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⑥ 우편요금 지급에 대한 증거서류는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